

9-1-2 |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12. 2. 14.)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조합장이 사용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내용

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공개요청시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 요청시 조합원이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한 알 권리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령상 알 권리를 사용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개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은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9-1-3 |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12. 7. 18.)

질의요지

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2012.8.2.시행)의 조합원 명부 공개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명, 주소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나.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시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공서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로 제공하여도 되는 것인지를

다. 조합원 자택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 요청 시 이것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2012.8.2. 시행)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9-1-4

본인 동의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12. 9. 14.)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

9-1-5

관리처분계획서 전부를 공람 및 공개해야 하는지('12. 7. 18.)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서 전부(타인의 토지, 건축물의 명